

노동자 &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 
안전사고 · 직업성질환 예방지침

# 청소 노동자



• 거리미화원

• 건물청소원

•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원

# Contents



## 거리미화원

- 작업 시 발생 가능한 위험 상황 2
- 개인보호구 및 작업도구 2
- 유형별 사고 예방법 3
-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수칙 4
-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점검표 5

## 서울노동권익센터 소개

6

##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원

- 작업 시 발생 가능한 위험 상황 8
- 개인보호구 및 작업도구 8
- 유형별 사고 예방법 9
-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수칙 10
-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점검표 11

##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소개

12

## 건물 청소원

- 작업 시 발생 가능한 위험 상황 14
- 개인보호구 및 작업도구 15
- 유형별 사고 예방법 16
-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수칙 17
-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점검표 18

## 사업주

- 꼭 지켜야 할 안전사고·직업성 질환 예방수칙 20

## 중대재해처벌법 바로 알기

21

# 거리 미화원



# 거리미화원

## 작업 시 발생 가능한 위험 상황

### ■ 위험유형



교통사고



넘어짐



중량물 취급



떨림·베임

### ■ 단계별 위험 상황

작업  
준비

**출근** 교통사고, 넘어짐

**환복 및 도구준비** 부딪힘

**이동** 교통사고, 넘어짐

가로  
청소

**비질** 교통사고, 근골격계질환

**대봉투 사용** 급성요통, 찢림·베임, 근골격계질환

**손수레 사용** 교통사고, 급성요통, 근골격계질환

작업  
종료

**정리정돈 및 환복** 부딪힘

**세면·샤워** 넘어짐

**퇴근** 교통사고, 넘어짐

## 개인보호구 및 작업도구



- ✓ **빗자루** | 가벼운 무게, 거리청소 전용
- ✓ **손수레** | 큰바퀴, 방향전환 용이, 자립 정지기능, 반사판 부착
- ✓ **작업복·안전모** | 형광색상 및 높은 채도, 반사띠 부착
- ✓ **마스크** | 분진 및 미세먼지 차단 기능
- ✓ **보호장갑** | 끼임·찢림·베임 등으로부터 보호가능 재질
- ✓ **작업화** | 발 보호 가능한 미끄럼방지 기능·경량
- ✓ **계절용품** | 방한복, 방한모, 방한화, 방한장갑

## 유형별 사고 예방법



### 도로변 비질 작업 중 교통 사고



#### 예방대책

- 차량이동 반대방향으로 작업 진행
- 작업진행 전방에 손수레 등을 배치해 작업공간 확보
- 야간 작업 시 반사띠 등이 부착된 작업복 및 도구 사용
- 어두운 새벽, 야간 작업 최소화 및 제한

### 가로 청소 및 이동 중 넘어짐



#### 예방대책

- 앞으로 나아가며 작업 진행
- 작업 및 이동 시 장애물 등 바닥상태 확인
- 미끄럼방지 작업화 착용

### 중량물 취급 중 급성요통



#### 예방대책

- 작업한 쓰레기 등은 20kg이하로 분리 포장해 이동
- 포장단위가 작고 손잡이가 있는 수거용기 사용
- 작업물을 들고 이동 시 짧은 거리라도 손수레 활용

### 낙엽 수거 중 찢림·베임



#### 예방대책

- 수거 전 날카로운 물건이 없는지 확인
- 안전장갑 등 보호구 착용
- 쓰레기 수거 전용도구 사용

##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수칙

### 꼭 기억하세요!

- ✓ 작업은 **차량흐름 반대 방향**으로 진행하며, 가능한 **보도와 가까이** 밀착해 움직입니다.
- ✓ 길을 건널 때는 반드시 **신호를 확인**하고 **횡단보도를 이용**합니다.
- ✓ 작업진행 **전방에 손수레** 등을 비치해 안전한 **작업공간을 확보**합니다.
- ✓ **야간** 작업 시에는 **반사띠** 부착 **작업복**과 **작업모**를 착용하고, **손수레**에도 **반사판**을 설치해 안전한 작업공간을 확보합니다.
- ✓ 무거운 **작업물은 소단위**로 분리 포장하며, 짧은 거리라도 **손수레로 이동**합니다.
- ✓ **분진과 미세먼지** 흡입을 막기 위한 **보호용 마스크** 등 안전장구를 꼭 착용합니다.
- ✓ **흡서기, 흡한기** 작업 시에는 상황별 **작업절차**를 **준수**해 사고를 예방합니다.

# 한 번 더 확인!

##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

### 점검표

		점검항목	예	아니오
1	산업재해	급박한 위험 등 발생 작업중지 및 안전보건조치 후 다시 작업 시작		
2		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 1개월 이내 제출 및 재해 재발방지 마련		
3	안전보건교육	분기별 3시간 이상 실시		
4	작업환경측정	반기별 대상 사업장 여부 확인 및 해당 시 작업환경측정 실시		
5	건강진단	매년 일반건강진단 실시		
6		6~24개월 주기 특수건강진단 대상 사업장 여부 확인 및 해당 시 특수건강진단 실시		
7	위험성평가	매년 사고·질환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		
8	유해요인조사	3년 주기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유해요인조사 실시		
9	보호구 및 작업도구	상시 작업 형태에 따른 필요 보호구 지급 - 안전모, 안전화, 안전장갑, 방진마스크, 작업복 등		
10			가벼운 빗자루 지급, 손수레 등에 반사판 부착	
11	위생 및 휴게시설	상시 휴게시설 설치·제공		
12			세면·목욕시설, 탈의 및 세탁시설 설치·제공	
13	날씨·온도	기상특보(주의보 및 경보) 발생 시 기상상황 전달		
14		여름 시원하고 깨끗한 식수 및 그늘, 휴게장소, 휴식시간 제공		
15			폭염 단계별 대응요령 준수 및 교육 실시	
16		겨울 방한장구(방한복, 방한화, 방한장갑)와 온수·휴게장소 제공		
17			한파 단계별 대응요령 준수 및 교육 실시	

일하는 서울시민을 위한 종합지원공간

# 서울노동권익센터



임금체불, 부당해고, 산업재해, 일터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나요?  
혼자 고민하지 마세요.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상담부터 조정,  
권리구제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립니다.

## 일하면서 누려야 할 권리를 찾아주는 통합 지원공간

센터에 상주하는 공인노무사가 피해상담, 노동청 진정사건 대리  
등 법률구제 지원과 자문을 해주며,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  
수 있는 맞춤형 노동교육을 실시



###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분야

최저임금위반, 임금체불, 부당해고, 산업재해, 실업급여,  
비정규직 차별



#### • 법률전문가 자문

노동인권단체, 법률전문위원  
등으로 구성된  
노동인권네트워크 운영



#### • 노동상담

공인노무사가 상시적·밀착형  
상담을 통해 해결방안 제시



#### • 권리구제지원

법적 쟁송 진행 전 원만한  
합의 및 조정 지원



#### • 노동교육

일하는 시민을 위해 노동법과  
노동인문학 맞춤형 무료 교육

### i 이용안내

- 시간 평일 오전 9시~오후 6시(점심시간 12시~1시)
- 신청 방문 종로구 청계천로 105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5층  
온라인 [www.labors.or.kr](http://www.labors.or.kr) | 전화 02.376.0001

#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원



#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원

## 작업 시 발생 가능한 위험 상황

### ■ 위험유형



넘어짐

떨어짐

중량물 취급

끼임

### ■ 단계별 위험 상황

#### 작업 준비

- 출근** 교통사고, 넘어짐
- 환복 및 도구준비** 부딪힘
- 이동** 교통사고, 넘어짐

#### 수거 작업

- 수거차량·도보이동** 교통사고, 넘어짐
- 수거차량 상하차** 떨어짐, 부딪힘
- 수거물 상하차** 맞음, 찢림·베임
- 수거물 정리** 떨어짐, 끼임
- 수거물 파쇄** 맞음, 찢림·베임
- 공통** 근골격계 질환

#### 작업 종료

- 정리정돈 및 환복** 부딪힘
- 세면·샤워** 넘어짐
- 퇴근** 교통사고, 넘어짐

## 개인보호구 및 작업도구



- ✓ **수거차량** 적재함 그물망, 유압장치 덮개, 비상정지 및 후진경고장치 기능 설치
- ✓ **작업복·안전모** 형광색상 및 높은 채도, 반사띠 부착
- ✓ **마스크** 분진 및 미세먼지 차단 기능
- ✓ **보호장갑** 끼임·찢림·베임 등으로부터 보호가능 재질
- ✓ **작업화** 발 보호 가능한 미끄럼방지 기능·경량
- ✓ **계절용품** 방한복, 방한모, 방한화, 방한장갑

## 유형별 사고 예방법



### 도보 이동 중 넘어짐



#### 예방대책

- 수거차량 속도 및 작업속도 일정하게 유지
- 무리한 수거물 운반 지양
- 미끄럼 방지 작업화 착용

### 적재함 및 차량후미 작업 중 떨어짐



#### 예방대책

- 적재함 최상단에 접이식 그물망 설치
- 과적금지
- 차량 이동 중 적재함 탑승 금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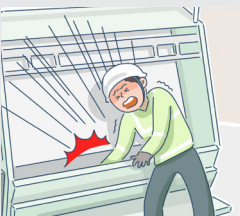
### 중량 수거물 취급 중 급성요통



#### 예방대책

- 작업 시 적정무게 취급
- 20kg이상 수거물 운반 시 여러 명이 함께 작업  
(협업 시 구호 사용으로 무리한 힘 금지)

### 수거차량 회전판 작동 중 끼임



#### 예방대책

- 협착 저감 안전장갑 착용
- 회전판 작동 시 접근금지장치 설치
-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

#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수칙

## 꼭 기억하세요!

- ✓ 수거물 운반 시에는 항상 **시야를 확보**하고, 수거**차량 속도**에 맞춰 **작업 속도를 조절**해 넘어짐 사고를 예방합니다.
- ✓ 수거차량에 **과적을 금지**하며, **적재물** 상단에 **접이식 그물망**을 설치해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.
- ✓ 무거운 **작업물은 여러명**이 함께 들고 이동하며, 필요 시 **손수레를 사용**합니다.
- ✓ **야간** 작업 시에는 **반사띠** 부착 **작업복**과 **작업모**를 착용하고, **차량**에도 **반사판**을 설치해 안전한 작업공간을 확보합니다.
- ✓ 수거물내 유리조각 등 **날카로운 물체**로부터 신체손상을 막기 위해 **보호장갑** 등 안전장구를 착용합니다.
- ✓ **분진과 미세먼지** 흡입을 막기 위한 **보호용 마스크** 등 안전장구를 꼭 착용합니다.
- ✓ **흡서기, 흡한기** 작업 시에는 상황별 **작업절차**를 **준수**해 사고를 예방합니다.

# 한 번 더 확인!

##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

### 점검표

점검항목			예	아니오
1	산업재해	급박한 위험 등 발생 시 작업중지 및 안전보건조치 후 다시 작업 시작		
2		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 1개월 이내 제출 및 재해 재발방지 마련		
3	안전보건교육	분기별 3시간 이상 실시		
4	작업환경측정	반기별 대상 사업장 여부 확인 및 해당 시 작업환경측정 실시		
5	건강진단	매년 일반건강진단 실시		
6		6~24개월 주기 특수건강진단 대상 사업장 여부 확인 및 해당 시 특수건강진단 실시		
7	위험성평가	매년 사고·질환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		
8	유해요인조사	3년 주기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유해요인조사 실시		
9	보호구 및 작업도구	상시 작업 형태에 따른 필요 보호구 지급 - 안전모, 안전화, 안전장갑, 방진마스크, 작업복 등 수거차량 적재함 내 떨어짐 방지(그물망 등) 조치 수거차량 리프트·회전판 비상정지장치 설치 수거차량(압착식·압축식) 덮개 설치 차량 후진 시 경고장치 부착 차량 승하차 시 미끄럼방지 조치		
10				
11				
12				
13				
14				
15	위생 및 휴게시설	상시 휴게시설 설치·제공 세면·목욕시설, 탈의 및 세탁시설 설치·제공		
16				
17	날씨·온도	기상특보(주의보 및 경보) 발생 기상상황 전달		
18		여름 시원하고 깨끗한 식수 및 그늘, 휴게장소, 휴식시간 제공		
19			폭염 단계별 대응요령 준수 및 교육 실시	
20		겨울 방한장구(방한복, 방한화, 방한장갑)와 온수·휴게장소 제공		
21			한파 단계별 대응요령 준수 및 교육 실시	

촘촘한 노동서비스

# 노동자종합지원센터



출근도 퇴근도 바쁜 지역 내 노동자들이 일터 또는 집과 가까운 센터에서 밀착형 상담과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중심 노동허브로 자치구별로 설치·운영합니다.

##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지역기반노동서비스 제공

지역 내 비정규직, 영세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 대상 임금체불, 부당 노동행위 등 노동관계법 위반상담과 산업재해 관련 법률상담 등을 실시  
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역중심 밀착서비스 무료 제공

### 위치



**도심권** 종로구 율곡로 56  
02-6959-5255

**서남권** 금천구 디지털로 207  
02-868-5255

**동북권** 동대문구 장한로 6  
02-2217-5255

**동남권** 송파구 중대로 97  
02-408-5255

**강북** 강북구 삼양로64길 32-20  
02-989-8580

**강서** 강서구 양천로10길 38  
02-2665-4038

**관악** 관악구 남부순환로234길 37  
02-886-7900

**광진** 광진구 자양로 116  
02-458-5055

**구로** 구로구 디지털로 242  
02-852-7339

**노원** 노원구 동일로 1530-1  
02-930-9024

**도봉** 도봉구 도봉로170길 2  
02-3494-4400

**마포** 마포구 매봉산로 18  
02-306-2227

**서대문** 서대문구 통일로 484  
02-395-0720

**성동** 성동구 상원6나길 22-11  
02-497-8573

**성북** 성북구 화랑로 211  
02-909-3988

**양천** 양천구 목동동로 81  
02-2645-0034

**영등포**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3길 24  
02-2633-7987

**은평** 은평구 통일로 1045  
02-6952-1875

**중구** 중구 을지로39길 40  
02-2269-2220

**중랑** 중랑구 양원역로 92  
02-496-8477

### 이용안내

- **시간** 평일 오전 9시~오후 6시(점심시간 12시~1시)
- **신청** 방문하고자 하는 센터로 전화 문의 후 상담시간 예약

# 건물 청소원



# 건물청소원

## 작업 시 발생 가능한 위험 상황

### ■ 위험유형



넘어짐



근골격계질환



부딪힘



떨어짐

### ■ 단계별 위험 상황

#### 작업 준비

- 출근 교통사고, 넘어짐
- 환복 및 도구준비 부딪힘
- 이동 넘어짐

#### 건물 내부

- 이동 넘어짐, 부딪힘
- 바닥청소 넘어짐, 부딪힘
- 창문청소 떨어짐
- 화장실청소 넘어짐, 부딪힘
- 계단청소 넘어짐
- 엘리베이터 청소 끼임
- 쓰레기정리 급성요통
- 동력기기 사용 끼임·감김, 넘어짐
- 유해물질 사용 급성중독, 화상, 호흡기 및 피부질환
- 공통 근골격계질환

#### 건물 외부

- 외벽청소 떨어짐, 부딪힘, 근골격계질환
- 실리콘 보수 떨어짐, 부딪힘, 근골격계질환

#### 작업 종료

- 정리정돈 및 환복 부딪힘
- 세면·샤워 넘어짐
- 퇴근 교통사고, 넘어짐

## 개인보호구 및 작업도구



- ✓ **작업복, 보안경, 마스크, 보호장갑** | 유해물질 취급 및 사용 시  
눈·호흡기·피부 보호 기능
- ✓ **작업화** | 물 청소 시 방수·미끄럼방지 기능·경량  
대형 청소도구 사용 시 발 보호 기능·경량
- ✓ **계절용품** | 방한복, 방한모, 방한화, 방한장갑



- ✓ **일반청소도구** | 가벼운 무게, 손잡이가 긴 형태
- ✓ **대형청소도구** | 경량화된 무선·충전식 형태



- ✓ **안전모·안전대** | 고소 작업 시 떨어짐 및 벽체와의 부딪힘으로  
인한 손상 최소화
- ✓ **지지로프** | 마모·부식, 풀림 등의 변형이 없는 형태

# 건물청소원

## 유형별 사고 예방법



### 이동 또는 작업 중 넘어짐



#### 예방대책

- 작업 시 충분한 시야 확보
- 계단은 오름방향으로 움직이며 작업
- 작업 시 물기확인 및 미끄럼방지 테이프 조치
- 물청소 작업 시 미끄럼 방지화 착용
- 겨울철 외부 작업 시 바닥상태 주의

### 불안정한 자세 및 반복작업 중 부상



#### 예방대책

- 작업 중 휴식 및 주기적 스트레칭
- 손잡이가 긴 도구 및 공구 사용 (필요 시 동력 도구 활용)

### 시설물 또는 물체 닦는 작업 중 부딪힘



#### 예방대책

- 모서리나 각진 부위에 충격완화패드 부착
- 부딪힘 주의 표지판 설치

### 건물 외부 로프작업 중 떨어짐



#### 예방대책

- 작업 시 지지로프 매듭상태 점검 철저
- 지지로프가 구조물과 닿는 부분에 대한 마모 확인
- 안전대를 수직구멍줄에 걸어 작업

##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수칙

### 꼭 기억하세요!

- ✓ 계단청소 시에는 천천히 이동하며, 작업은 낮은곳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진행합니다.
- ✓ 물청소 시에는 미끄럼방지 작업화를 착용하고, 미끄럼 사고 다발지역에는 위험안내판을 설치합니다.
- ✓ 허리굽히기, 쪼그려앉는 자세나 반복적인 행동이 동반되는 작업 시에는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해주고, 필요시 휴식을 취합니다.
- ✓ 작업 시에는 가급적 손잡이가 긴 청소도구 등을 사용하고 동력도구 등을 사용해 업무강도를 줄입니다.
- ✓ 쓰레기는 작은 묶음으로 나눠 운반하고, 무거운 물건은 여러명이 함께 이동 시킵니다.
- ✓ 부딪힘 사고 다발지역에는 충격완화패드를 부착하고, 위험안내판을 설치합니다.
- ✓ 유해물질이 차단되는 보안경, 보호장갑 등 안전장구를 착용해 유해물질로부터 최대한 신체를 보호하며, 가급적 유해성이 낮은 제품으로 사용합니다.
- ✓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모, 안전대를 착용하고, 안정적인 작업발판을 사용하며, 사고에 대비해 추락방지 매트도 설치합니다.
- ✓ 건물 외부 작업할 때 강풍, 돌풍이 불면 작업을 중지하고, 지시로프 고정매듭 및 마모 등 상태를 철저히 확인합니다. 안전대,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합니다.

# 한 번 더 확인!

##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

### 점검표

점검항목			예	아니오
1	산업재해	급박한 위험 등 발생 시 작업중지 및 안전보건조치 후 다시 작업 시작		
2		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 1개월 이내 제출 및 재해 재발방지 마련		
3	안전보건교육	분기별 3시간 이상 실시		
4	작업환경측정	반기별 대상 사업장 여부 확인 및 해당 시 작업환경측정 실시		
5	건강진단	매년 일반건강진단 실시		
6		6~24개월 주기 특수건강진단 대상 사업장 여부 확인 및 해당 시 특수건강진단 실시		
7	위험성평가	매년 사고·질환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		
8	유해요인조사	3년 주기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유해요인조사 실시		
9	물질안전보건자료	화학물질 사용 시 화학물질(세제류 등)의 안정성 확인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·유해성 주지		
10	보호구 및 작업도구	상시 작업 형태에 따른 필요 보호구 지급 - 안전모, 안전화, 안전장갑, 방진·방독마스크, 작업복 등		
11		가벼운 청소도구 지급 (무선 충전식 청소도구 권장)		
12	위생 및 휴게시설	상시 휴게시설 설치·제공		
13		세면·목욕시설, 탈의 및 세탁시설 설치·제공		
14	날씨·온도	기상특보(주의보 및 경보) 발생 시 기상상황 전달		
15		여름 시원하고 깨끗한 식수 및 그늘, 휴게장소, 휴식시간 제공		
16		폭염 단계별 대응요령 준수 및 교육 실시		
17		겨울 방한장구(방한복, 방한화, 방한장갑)와 온수·휴게장소 제공		
18		한파 단계별 대응요령 준수 및 교육 실시		

# 사업주



# 사업주가 꼭 지켜야 할 안전사고·직업성 질환 예방수칙

## • 사업주·노동자 작업중지 시행

(급박할 위험 등 발생 시)

**관련법**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, 제52조

## •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

(산업재해 발생 시, 1개월 이내)

**관련법**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, 시행규칙 제73조

## • 안전보건교육 실시

(분기별, 3시간 이상)

**관련법**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, 시행규칙 제26조

## • 작업환경측정 실시

(화학물질·소음·분진 등 노출 시, 반기별)

**관련법**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

## • 일반건강진단 실시

(연 1회 이상)

**관련법**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, 시행규칙 제197조

※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시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

## • 특수건강진단 실시

(화학물질·소음·분진 등 노출 시, 6~24개월별)

**관련법**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, 시행규칙 제201조, 제202조

※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 확인(시행규칙 [별표23])

## • 위험성평가 실시

(연 1회 이상)

**관련법**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

## •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실시

(3년 1회 이상)

**관련법**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

## •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·교육

(화학물질 사용 시)

**관련법**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

## • 개인보호구 지급 (상시)

**관련법**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

## • 휴게시설 설치·관리 (상시)

**관련법**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, 시행규칙 제194조2

## • 야외작업 안전보건기준 준수 (상시)

- » 온열·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절차 준수
- » 폭설, 폭우, 강풍 등 상황별 작업량 조정 및 작업중지

### 「중대재해처벌법」 바로 알기



#### 「중대재해처벌법」이란? (22. 1. 27. 시행)

안전·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, 경영책임자,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

#### 적용기준

- ▶ **사망자** 사망자 1명 이상
- ▶ **부상자**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
- ▶ **질병자**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 
\* 급성중독, 독성간염, 산소결핍증, 열사병 등 24개 질병

#### 적용범위

- ▶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
※ 50인 미만은 '24. 1. 27.부터 적용

#### 적용대상

- ▶ **개인사업주**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,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
- ▶ **경영책임자**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·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
- ▶ **종사자** 근로자 및 노무자(도급·용역·위탁 등 계약)

#### 처벌수위

- ▶ **사망자**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
- ▶ **부상 및 질병**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
- ▶ **양벌규정 법인/기관** 사망 시 50억원 이하 벌금, 부상 및 질병 시 10억 원 이하 벌금

※ 관련 지침 및 매뉴얼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([www.kosha.or.kr](http://www.kosha.or.kr)) 참고

서울형 산업안전보건수칙

노동자&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 
안전사고 · 직업성질환 예방지침